#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

□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,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, 이에 따른 표시 대상,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침임

#### 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[별표4]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\* 개정 2018.12.31., 시행 2020.1.1.
- 「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 [별표2]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
  - \* 개정 2019.12.16., 시행 2020.1.1.

#### □ 개 요

- ○(대상)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·수입되는 화장품
- ○(표시) 착향제는 "향료"로 표시할 수 있으나,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 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\*이 있는 경우에는 "향료"로만 표시할 수 없고,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
  - \* 표시대상성분: 「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25종 성분(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.01% 초과,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.001%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
- ○(경과조치) 2020.1.1.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·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

### □ 표시·기재 관련 세부 지침

- 1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기준인 0.01%, 0.001%의 산출 방법
- →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의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로 계산
  - 예)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(250 g) 제품에 리모넨이 0.05 g 포함 시, 0.05 g ÷ 250 g × 100 = 0.02% → 0.001% 초과하므로 표시 대상

- ②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인 "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" 및 "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"의 구분
- → "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"은 피부, 모발 등에 적용 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제품을 말함(예, 샴푸, 린스 등)

#### 3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에 따른 표기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

→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함량에 따른 표시 방법이나 순서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, 전성분 표시 방법을 적용하길 권장함

| 현 재               | $\Rightarrow$                     | 개 선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A, B, C, D,<br>향료 | 알레르기 유발성분인<br>리모넨, 리날룰이<br>포함된 경우 | 1안  | A, B, C, D, 향료, 리모넨, 리날룰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안  | A, B, C, D, 리모넨, 향료, 리날룰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안  | A, B, 리모넨, C, D, 향료, 리날룰<br>(함량 순으로 기재)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안  | <del>A, B, C, D, 향료(라모넨, 라날룰)</del>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안  | A, B, C, D, 향료, 리모넨*, 리날룰*<br>(알레르기 유발성분) |

- \* 1~3안은 가능하며, 4~5안은 소비자 오해·오인우려로 불가함
- 4 알레르기 유발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"사용 시의 주의사항"에 기재하여야 하는지
  - →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것의 취지는 전성분에 표시된 성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  - → 따라서 해당 25종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하면 해당 성분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함
  - → 또한 향료 중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는 "전성분 표시제"의 표시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, '사용 시의 주의사항'에 기재될 사항은 아님

- ⑤ 내용량 10mL(g) 초과 50mL(g)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
  - →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표시·기재를 위한 면적이 부족한 사유로 생략이 가능하나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→ 또한 소용량 화장품일지라도 표시 면적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함

#### 6 천연오일 또는 식물 추출물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여부

- → 식물의 꽃·잎·줄기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이나 추출물이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해당 성분이 착향제의 특성이 있는 경우 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·기재하여야 함
- 7 2019년(시행 전) 제조된 부자재로 2020년(부자재 유예기간) 제조한 화장 품을 2021년(부자재 사용 경과조치 기간 종료 후)에 유통·판매가능한지
  - → 부자재 유예기간 종료 전에 기존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은 그 화장품의 사용기한까지 유통할 수 있음
  - → 다만 소비자 건강보호라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권장
- ③ 책임판매업자 홈페이지, 온라인 판매처 사이트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성 분을 표시해야 하는지
  - → 온라인 상에서도 전성분 표시사항에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여야 함
  - → 다만 기존 부자재 사용으로 실제 유통 중인 제품과 온라인 상의 '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'의 표시사항에 차이가 나는 경우 소비자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유통 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상의 표시사항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

#### □ 원료목록 보고 관련 세부 지침

#### 1 원료목록 보고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포함 여부

- →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원료목록 보고에도 포함하여야 함
- ② 시행일 이전에 제조·수입되어 유통 중인 제품의 경우에도 원료목록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지
  - →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하여 기존 유통품의 표시·기재사항을 변경 하고자 한다면 원료목록 보고 시에도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 게 적절함

### 3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증빙자료

→ 책임판매업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재된 '제조증명서'나 '제품 표준서'를 구비하여야 하며, 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에 포함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신뢰성 있는 자료(예: 시험 성적서, 원료규격서 등)를 보관할 것

# 참고 1

## 관련 법령

-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
  - \* 개정 2018.12.31., 시행 2020.1.1.
-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4]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(제19조제6항 관련)
- 3.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
  - 마. 착향제는 "향료"로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,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·표시해야 한다.
- 부 칙 <총리령 제1516호, 2018. 12. 31.> 제5조(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
- ①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·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.

리모넨

메틸 2-옥티노에이트

참나무이끼추출물

나무이끼추출물

알파-아이소메틸아이오논

21

22

23

24

25

○ 「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 \* 개정 2019.12.16.. 시행 2020.1.1.

#### [별표 2]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(제3조 관련) 성분명 여번 CAS 등록번호 아밀신남알 CAS No 122-40-7 1 벤질알코올 CAS No 100-51-6 신나밀알코올 3 CAS No 104-54-1 시트랄 CAS No 5392-40-5 4 유제놀 CAS No 97-53-0 5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6 CAS No 107-75-5 7 아이소유제놀 CAS No 97-54-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-85-9 베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-58-1 9 신남알 10 CAS No 104-55-2 쿠마린 CAS No 91-64-5 11 12 제라니옼 CAS No 106-24-1 13 아니스알코올 CAS No 105-13-5 벤질신나메이트 14 CAS No 103-41-3 파네솔 CAS No 4602-84-0 15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CAS No 80-54-6 16 리날룰 17 CAS No 78-70-6 벤질벤조에이트 18 CAS No 120-51-4 시트로넬올 CAS No 106-22-9 1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-86-0

\*\* 다만,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.01% 초과,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.001%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.

CAS No 5989-27-5

CAS No 111-12-6

CAS No 127-51-5

CAS No 90028-68-5

CAS No 90028-67-4